

동호회 운영지침

제정 2003. 4.21
개정 2012.12.27
개정 2016. 2. 1
개정 2017.12.27
개정 2018.12.12
개정 2022.08.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지규정 제31조에 의거 주택도시보증공사내에 동호회등록, 운영 및 동호회활동에 따른 활동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2조(적용범위)

동호회활동에 관한 적용범위는 동호회로 등록·승인된 동호회로 하고, 동호회 회원의 자격은 재직중인 임직원(임시직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라 함은 직원상호간 사회활동 또는 취미활동을 통하여 친선도모와 인격도야, 건강증진 및 자아실현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써 공사로부터 활동비지원을 받는 모임을 말한다.<개폐정리 2015. 6.30>
2. “회원”이라함 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직원을 말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으로서 활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갖춘 직원(임시직 포함)을 말하며, 복수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4. “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으로 가입한 동호회 이외의 타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을 말하여, 준회원은 타 동호회에 복수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동호회의 구성)

- ① 최초 동호회의 구성은 회원중 7인 이상의 정회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별첨1)에 의해 동호회장의 승인을 득한 직원에 한한다. 단, 본사 소재지 이외 지역부서 직원이 해당 부서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할 경

우에는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1개의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직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 전체 직원으로 구성된 1개의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2.08.04.>

- ② 정회원이 동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입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탈퇴시 별첨2의 회원탈퇴 신청서(사내 전산망에 의한 신청으로 갈음가능)를 동호회 회장을 경유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근무지역외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2., 2022.08.04.>
- ③ 동호회 정회원이 된 자는 다른 동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5조(등록 및 승인요건)

- ① 동호회 등록은 동호회등록신청서(별첨3)에 의한다.
- ② 동호회 등록 신청시 등록승인요건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동호회활동승인서(별첨4)에 의거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동호회 등록신청시 동호회명칭 및 운영회칙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칙내에는 명칭, 목적, 회원의 자격, 주요활동사항, 임원 및 운영진의 구성과 임무, 임원 및 운영진의 선출과 임기, 회의 및 의결사항, 회원입회자격 및 박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동호회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동호회 활동사항이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거나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불허하며, 승인된 동호회가 비윤리적인 활동이나 공사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을 한 경우 그 동호회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소하고 활동비 지원을 중지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6조(신고의무)

동호회의 회장은 회원의 입회, 탈퇴 및 회칙의 변경 등 제반 동호회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동호회변경사항신고서(별첨5)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호회운영에 관한 책임)

동호회는 동호회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동호회운영에 관한 관리 책임은 모든 동호회원에게 있다.

제8조(동호회 활동 사전신고)

- ① 동호회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공사의 홍보등을 통하여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호회활동 2주전에 활동내용, 참석인원, 소요예산등 행사개요를 동호회 소관부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별첨6) <개정 2022.08.04.>
- ② 동호회 소관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등을 고려하여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4.>
- ③ 동호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동호회활동의 정의 및 기준)

- ① 동호회활동이란 4인 이상의 정회원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동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동호회의 구성원이 지역이 다른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8.04.>
- ② 동호회원이 강습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강습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4.>
- ③ 각 동호회는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고유의 목적(각 동호회별 1가지 목적에 한함)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각 동호회는 년 4회의 범위내에서 회칙에서 정한 부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10조(동호회 비용지원 기준)

- ① 동호회는 제9조 제3항 또는 4항의 활동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호회 비용을 지원한다.
- ② 비용지원 한도는 동호회활동 참여인원 중 정회원을 기준으로 1인당 1회 5만원 이내로 한다. 단, 동호회별 매월 2회, 당해연도 1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③ 동호회 비용은 동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성 활동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소액 공용적 소모품 구입비용은 소관부서장의 승인

을 얻은 품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08.04.>

1. 각종 대회 참가비용
 2. 차량 또는 선박 대여료(유류비 등 부수비용 포함)
 3.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4. 장비대여료
 5. 강좌 수강료 또는 강사 초빙료
 6. 기타 통상적인 동호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성 활동비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호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식음료비용이 동호회 비용지원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개정 2012.12.27., 2017.12.27.>
 2. <삭제 2022.08.04.>
 3. 회원탈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에 의한 정회원수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4. 제8조에 의한 동호회활동 및 비용집행에 관한 사전신고 내용과 다른 동호회 활동 및 비용집행을 한 경우5~6호. (삭제)
 - ⑤ (삭제)
 - ⑥ 동호회 비용은 신규 가입한 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기존 동호회를 탈퇴하고 다른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활동을 한 동호회 비용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 2. 1>
 - ⑦ <삭제 2022.08.04.>
 - ⑧ 식음료비용은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활동일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활동일에 집행하지 않은 비용 중 활동 연계성이 소명되는 등 소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08.04.>

제11조(동호회 비용지원 절차)

동호회비용지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및 절차에 의한다.

1. 동호회 비용지원 신청서(별첨7)에 비용지출내역 및 회원명부(별첨8)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지원신청 원인행위의 책임자는 동호회 회장으로 한다.<개정 2016. 2. 1>
2. <개정 2012.12.27.><삭제 2016. 2. 1>

3. 증빙서는 법인경비 지출요건에 의거 법인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교습 및 강의), 현금등록기영수증에 한한다. 다만, 현금등록기영수증은 3만원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4. 동호회 활동일별로 사진이 첨부된 동호회 활동보고서(별첨13)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4.>

제11조의2(동호회 활동내용 공유)

- ① 각 동호회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 ② 동호회 소관부서장은 동호회 활동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08.04.>

제12조(활동비지원 신청시기)

동호회활동비의 지원신청은 매월1회로 한정하고, 익월1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한다. 다만, 동호회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황에 따라 지출시기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동호회지원업무의 위임)

동호회활동지원업무는 복지담당부서에 둔다.

제14조 <삭제2007. 5. 28>

제15조(윤리준법의무)

동호회 회원은 동호회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활동하되 사회의 법과 윤리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16조(벌칙)

윤리준법의무를 위반하거나 동호회활동에 관하여 동호회 본래목적에 벗어나는 지출 또는 허위증빙자료제출시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개월이내의 활동비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동호회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의2(동호회 해산)

동호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동호회 회장은 별첨 12에 따른 동호회 해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7조(동호회 세부운영지침)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동호회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8.04.>

부 칙

이 지침은 2003.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 12. 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 3.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2조(기 구입한 동호회 자산의 관리)

- ① 본 지침 시행전에 기 구입한 자산은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자산관리대장(별표10)을 작성하여 동호회 자산으로 관리하며, 자산을 망실한 경우에는 동호회원의 공동책임으로 변상한다.
- ② 제1항의 동호회자산은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4년) 경과후 동호회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처리할 수 있으며, 상각승인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상각대상자산, 구입연월일, 구입금액 및 상각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상각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동호회에서 자산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회원이 제2항의 상각승인 전에 동호회를 탈퇴할 경우 해당 자산을 동호회에 반납한 후 동호회를 탈퇴하며, 반납한 자산은 해당 동호회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 ④ 자산을 구입한 동호회가 제2항의 상각승인 전에 해체(폐지)될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각 동호회에서 기 구입하여 동호회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제10조 4항 5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⑥ 각 동호회는 매 분기별로 동호회 자산관리현황(별표 10의 자산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5조 제4항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동호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삭제 2022.08.04.>

부 칙
이 지침은 2007. 5.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 12.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 07.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 09.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 01.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
이 지침은 2016. 2.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7.>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2>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04>
이 지침은 2022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승 인	총무	회장

회원이입신청서

동호회 명칭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공사전화: 개인전화:		e-mail		

상기 본인은 ()동호회에 회원(정회원, 준회원)
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품위를
지킬 것을 약속하니 회원가입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입회신청자 : 서명

동호회 회장귀하

[별첨2]

승 인	총무	회장

회원탈퇴신청서

동호회 명칭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공사전화: 개인전화:		e-mail		

상기 본인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탈퇴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탈퇴신청자 : 서명

동호회 회장귀하

[별첨3]

결재	담당	팀장	부장

동호회등록 신청서

1. 동호회 명칭					
2. 동호회 소개					
3. 동호회 목적					
4. 회원 인원수	명				
회원명단					
회원명	회원구분	동호회직책	소속부서	가입년월일	비고

- 첨부: 1.동호회회칙 1부.
2.회원명부 1부(10명초과시 별도첨부)
3.회원가입신청서사본 각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동호회회장 (서명)

[별첨4]<개폐정리 2015. 6.30>

동호회활동 승인서

()동호회회장 귀하

귀하가 동호회로 등록.승인 신청한 동호회에 대하여 . . 일부로 승인하니 동호회활동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회 활동시 유의사항

1. 동호회활동이 공사업무에 우선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호회회칙제정 및 개정시 종교적인 이유나 남녀의 성별차이를 이유로 회원가입이나 활동시 특정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동호회 활동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직원상호간에 갈등이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동호회활동내용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5. 동호회 활동비지출 및 활동비지원신청시 사위에 의한 신청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별첨5]

결재	담당	팀장	부장

동호회 변경사항 신고서

1.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내용	비고

- * 변경사항에 회칙변경, 회원입회 및 탈퇴, 임원진 변경 및 기타 변경사항 기입
- * 변경내용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

2. 변경사항에 대한 첨부물

- 가. 동호회 회칙변경시 친구조문1부
- 나. 회원 입회 및 탈퇴시 입회신청서 및 탈퇴신청서 사본 각1부
- 다. 회원 임원변경시 친구임원 변경전.후 대비표 1부.
- 라. 회원의 직책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1부

()동호회회장 : (서명)

[별첨6]

()월 동호회활동 사전신고서

결재	담당	팀장	부장

구분	내용	비고
활동일시		
활동장소		
참석예정인원		
활동내용		
예산 지출비용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동호회회장 : (서명)

[별첨7]

()월 동호회활동비 지원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부장

동호회 명칭	
1. 활동일시 :	
2. 활동내용 :	
3. 활동참석인원 : 명 (명단별첨)	
4. 비용지원요청금액 : 원 (세부지출내역 및 증빙서 별첨)	
5. 비용입금요청계좌: 00 은행 : 예금주:	

- 첨부 : 1. 세부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서
2. 동호회활동 참석자명단
3. 회원명부

()동호회회장 : (서명)

[별첨8]

회원 명부

()동호회

연번	동호회 직책	회원구분 (정,준회원)	소속부서	성명	가입연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9] <삭 제 2012.12.27>

[별첨10]

동호회 자산관리대장

☐ 동호회명 :

[illegible]

[별첨11]<개정 2016. 2. 1>

()월 동호회 비용 지원신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동호회 명칭				
활동일시				
활동장소 (구체적 명시)				
회원명부 (총 회 원)		참석인원		
활동내용 (일별 구체적 명시)				
지출비용				
비용입금요청계좌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첨 부 1. 세부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서
2. 동호회 회원명부

()동호회 회장 : (서명)

[별첨12] <신설 2012.12.27>

결 재	담 당	팀 장	부 장

동호회해산 신청서

1. 동호회 명칭					
2. 해산사유					
3. 회원 인원수		명			
회원명단					
회원명	회원구분	동호회직책	소속부서	가입년월일	비 고

- 첨부: 1.회원명부 1부
2.회원탈퇴신청서사본 각1부
3.자산관리대장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동호회회장 (서명)

()월 동호회 활동보고서

구 분	내 용			비 고
활동일시				
활동장소 (구체적 명시)				
참석인원		참석정회원		
활동내용				
증빙사진				

()동호회 회장 : (서명)